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37호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 강릉시 의회의장

###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나.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 다.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4조)
- 마. 인권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 4. 참고사항

-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 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배치와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상담·조사·권고하는 사항
5.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권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련기관 의견제출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강릉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업무 지원
2.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사항

3.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 홍보

4.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천에 관한 사항

5.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의 연구·개발 관련 사항

6.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개선·권고

가.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시가 지도·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다.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경우

8.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지원

9.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 불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인권센터 직원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